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 등 안내



1.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비 및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환급*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,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**5년 이내에** 정정하여 환급이 가능함

2.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‘2023 중소기업 세제·세정 지원 제도’ 안내서를 배부(붙임)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, 법인세 등 기 납부세액 환급 업무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법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업체명** : 세무법인 다솔(담당 : 문정기 세무사, 02-550-2000)
※ 환경업체 대상 컨설팅 및 권리구제(경정청구 등) 이력 다수 보유
- 주요 업무**
 - 법인세 등 기납부세액 환급업무 지원 및 전문적인 세무 진단 등

붙임 : 2023 중소기업 세제·세정지원 제도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담당 윤성현 부장 강한서 본부장 이원표 사무총장 조정환 회장 박하준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- 315호 (2023.5.30) 접수

우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koras01@naver.com / 공개